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 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번호	제4차
일자	2015. 2.

# 센 [SSEN]수학 러닝센터

## 가맹계약서

(  신규계약용 /  재계약용 )

“甲”	회사명	주식회사 신사고아카데미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방배동) 정금빌딩 2층

“乙”	센터명		성명	
	연락처		E-mail	
	거주주소			

(주)신사고아카데미

가맹본부 (주)신사고아카데미(이하 “甲”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_\_\_\_\_(이하 “乙”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썸수학러닝센터』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乙”이 “甲”의 『썸수학러닝센터』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원으로 참여하여 『썸수학러닝센터』 가맹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乙”에게 “본 계약”에 의한 『썸수학러닝센터』 가맹점(이하 “가맹원”이라 한다) 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甲”을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가맹원 운영권을 부여받은 자 “乙”을 말한다.
- ③ “가맹원운영권”이라 함은 “甲”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乙”에게 『썸수학러닝센터』 가맹원을 운영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④ “제품”이라 함은 “甲”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乙”의 가맹원에서 원생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교재 등을 말한다.
- ⑤ “가맹비”라 함은 “乙”이 가맹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초도물품 대가(교재, 판촉물), 개점(이하 “개원”이라 한다) 전 교육의 대가, 기타 가맹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으로 “甲”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⑥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甲”의 허락을 받아 신규가맹점을 모집, 개설, 지원, 교육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 (가맹원의 표시)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乙”이 개설하는 가맹원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원 소재지 : \_\_\_\_\_.
  2. 가맹원의 규모 : \_\_\_\_\_㎡( \_\_\_\_\_ 평)
  3. 상 호 : (썸수학러닝센터) \_\_\_\_\_
  4. 가맹원 원장명 : \_\_\_\_\_(주민등록번호)
- ② “乙”은 “甲”의 서면승인 없이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甲”의 승인 하에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한다.
- ③ “乙”은 2개소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甲”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한다. 단, 가맹원 이전 시 “乙”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지사의 영업거점(관할)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 (영업지역)

- ① “甲”은 본 계약기간 동안 “乙”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거점을 부여하며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천 세대 당 1점포
  2. 설정방법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甲”은 “乙”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영업지역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1~3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甲”과 “乙”을 다음과 같은 영업지역의 재조정 절차 및 서면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甲”은 재조정 사유 발생 시 영업지역 변경(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乙”은 “甲”의 영업지역 변경(안)에 대해 요청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3. “乙”이 영업지역 변경(안)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15일 이내에 변경된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하여 서면 날인하여야 한다.
  - ④ “乙”은 “甲”과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乙”이 약정한 영업지역 외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甲”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乙”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甲”은 “乙”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乙”의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3. “乙”이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甲”에게 심각한 영업활동의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되, “乙” 또는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안을 거부 할 경우 상호 당사자간 분쟁을 민사문제로 해결하여야하며, “甲”은 관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계약기간과 갱신)

- 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_\_\_\_\_년 월 일 ~ \_\_\_\_\_년 월 일)
-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乙”이 가맹계약상의 교육비, 로열티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원 원장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乙”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원의 운영에 필요한 가맹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甲”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甲”이 가맹원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③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 “甲”이 위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乙”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甲”이 위 제4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乙”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甲”이나 “乙”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 신청,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 ① “甲”과 “乙”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이고, “乙”은 “甲”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乙”은 “甲”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 ② “乙”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乙”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③ “乙”은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甲”은 “乙”의 노동관계 및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2장 개원준비**

**제7조 (입지선정)**

- ① “乙”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원의 입지를 선정하며, “乙”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甲”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乙”이 하며, 가맹원의 매출액 및 수익은 “乙”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확약한다.
- ② 개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乙”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제8조 (인테리어 공사)**

- ① “乙”은 “甲”이 제시한 BI 및 인테리어 매뉴얼에 의거하여 “甲”의 대리인인 “지사”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인테리어 공사는 “乙” 스스로 “甲”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직접 시공한다.
- ③ “甲”이 제공한 B.I 및 인테리어 매뉴얼에 의해 “乙”의 공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재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개원 전 교육·훈련)**

- ① “乙”은 가맹점 계약 후 60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16.5시간으로 한다. 다만, “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乙”의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위의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추가 교육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개원 전 교육비는 가맹비에 1명 기준이며,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乙”이 부담한다.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④ “乙”은 “甲”이 실시하는 개원 전 교육에 가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甲”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인·허가)**

가맹원 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원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제반 인·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乙”에게 있다.

**제11조 (개원승인)**

- ① “乙”은 가맹원의 설비와 기기 등에 관하여 “甲”이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원에 앞서 “甲”으로부터 시설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개원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1. “乙”이 제7조 내지 제10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 그 밖의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원이 연기되는 경우

**제3장 “甲”과 “乙”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가맹비)**

- ① “乙”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6,150,000원(부가세 포함)을 1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제3호의 경우 “甲”의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甲”에 서면으로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甲”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비를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甲”이 “乙”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③ 위 제2항의 각 호의 경우 및 “본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에 대하여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1. 가맹점 계약 후 60일 이내 가맹사업 개시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乙”에게 이미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 2.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비는 “乙”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교육·지원 등의 대가 명목으로 “甲”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가입비의 세부내역과 반환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 (1) 가맹비 내역

[단위:원]

가맹비	가맹비 세부내역			
	교육비	판촉물	교재	로열티
6,150,000	400,000	600,000	1,368,000	3,782,000

(2) 반환 조건

구분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계약 후 2개월 이내 해지	- 2개월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노하우 및 인력,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 2개월 후 : 반환하지 않음 (소멸성)
판촉물	미개봉시	- 물품을 개봉한 경우에는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교재	미개봉시	
교육비	교육 이수 여부	- 교육 이수 전 : 전액반환 - 교육 이수 후 : 반환불가 (소멸성)

- ④ “甲”이 가맹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乙”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乙”의 가맹원 원장 및 강사는 아래의 교육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주요내용	교육시간	비용 (VAT 포함)
썬수학지도사 양성과정	강사전형 테스트 통과자	-초등,중등 과정 지도법 실전	1일 (8.5시간)	110,000원 (별도 비용)
향상 교육	신입교육 (개원 전 교육)	-시스템 및 수업안 -운영 및 학부모 상담 등	1박 2일 (16.5시간)	400,000원 (1인 기준, 가맹비에 포함)
	썬수학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초등, 중등과정 개념 및 문제풀이 심화	3~5시간	실비
특별교육	원장 또는 강사	-마케팅 및 운영지도 등	2~8시간	실비
	원장 또는 강사	-요청사항 (교육정책, 상담 등)	2~8시간	실비

② “乙”은 강사 교체 및 신규 추가 채용 후 2개월 이내, 아래의 강사전형 테스트 통과하고 제 1항의 썬수학지도사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주요내용	시간	비용
강사전형 테스트	신규 강사	초등, 중등 실력 검증	1~2시간	무료

③ 향상교육은 “甲”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甲”이 책정하고 “乙”에게 그 산출 근거를 홈페이지의 센터 관리자 상에 공지한다. “乙” 및 “乙”의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④ “乙”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甲”에게 특별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甲”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원의 원장 및 강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⑥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교육비는 신입교육 외에는 모두 제12조 소정의 가맹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교육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이 개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⑦ 썬수학 지도사 양성과정은 가맹 후 90일 이내에 초등·중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비용은 “乙”이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甲”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① “乙” 또는 “乙”의 직원은 가맹원 운영을 통해 취득한 “甲”의 영업 비밀 및 “甲”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교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甲”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제15조 (경업금지 의무)

“乙”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甲”의 허락없이 “乙” 또는 제3자의 명의로 “甲”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경영지도)

“甲”은 “乙”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甲”의 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 ② 표준화(standardization): 원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시스템 및 교재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 ③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 ④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원생 창출 및 매출 증진 방안에 대한 지도
- ⑤ 가맹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제17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 ① “甲”은 “乙”의 가맹원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원을 점검하고 교육 상태, 안전 및 청결 상태, 회계자료 열람 등 가맹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자가, 전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원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4장 “乙”의 영업활동과 “甲”의 지원

### 제18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 ① “乙”은 반드시 “甲”이 제시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서비스만을 원생에게 판매·제공한다. 따라서 “甲”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교재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甲”이 제시한 시스템 및 교재를 다른 시스템 및 교재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甲”과 협의하여 “甲”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甲”은 “乙”에게 시스템 및 교재를 제공하고, “乙”은 “甲”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위 시스템 및 교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乙”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수강료 및 교재 권장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甲”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甲”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甲”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 (상품 등의 조달 및 결제)

- ① “甲”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품(이하 “필수품목”이라 한다)을 “乙”에게 공급한다. 다만, “甲”의 경영방침에 따라 상품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甲”이 공급하는 시스템, 교재 및 온라인 교육 자료
  2. “甲”이 공급하는 러닝센터 운영 비용
  3. 기타 “甲”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상품
  4. 기타 “甲”과 “乙”이 협의한 상품
- ② “乙”은 “甲”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필요한 품목의 주문을 완료하여야 하고, “甲”은 “乙”이 발주한 상품을 가맹원에 공급한다. 다만 “甲”과 “乙”이 협의한 경우 및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또는 “甲”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乙”은 교재 및 물품의 대금을 선입금 한 후 “甲”에게 주문하며 “甲”은 주문 확인 즉시 “乙”에게 공급 및 배송한다.
- ④ “乙”은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필수품을 지정고객(수강생) 외 타가맹원에 공급하거나 “甲”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甲”이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甲”이 정하며, 시장상황 또는 “甲”의 사정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제20조 (상품의 하자 검사와 반품 등)**

- ① “乙”은 상품을 공급 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甲” 또는 “甲”의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乙”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甲”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한 상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자재 또는 “乙”의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 ④ “乙”은 “甲”이 제시한 규정 및 지정하는 기일 내에 반품 및 교환을 신청해야하며, “乙”의 귀책 사유로 반품이 발생 할 경우 교재의 관리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재 권당 오천원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품 시 운송 방법은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착불 발송한다.
- ⑤ 기일이 지난 교환 및 반품은 “甲”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乙”에 대한 상품의 공급 및 영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와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乙”이 “甲”의 사전 동의 없이 “甲”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2. “乙”의 위법행위로 가맹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3. “甲”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甲”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甲”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4. “乙”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원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6. “乙” 또는 “乙”의 직원이 “甲”이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는 경우
  - 7. “乙”이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甲”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 8. “乙”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甲”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9. “乙”이 제18조 제1항의 “甲”이 서면 승인한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0. “乙”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甲”의 동의없이 시스템 및 교재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甲”에 의하여 변경된 시스템 및 교재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 “乙”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품목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복사 또는 표절하여 사용한 경우
  - 12. “乙”이 “甲”의 사전동의 없이 가맹원의 권리이전, 명의변경등 영업양도와 관련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13. “乙”이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수 품목을 타가맹점에 제공·판매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14. “乙”이 제22조의 운영일수를 위반한 경우
  - 15. “乙”이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16. “乙”이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원의 운영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17. “乙”이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8. “乙”이 “甲”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 “乙”이 다수의 회원(수강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甲”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20. “乙”이 강사 교체 및 신규 추가 채용 2개월 이내에 “甲”의 강사전형 테스트 및 썸수학지도사 양성과정(시강포함)에 불응할 경우
- 21. “乙”이 강사 교체 및 신규 추가 채용 2개월 이내에 “甲”의 강사전형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3개월 동안 재응시 하지 않을 경우
- 22. “乙”이 강사 교체 및 신규 추가 채용 2개월 이내 “甲”의 강사전형 테스트에 합격하고, 2개월 안에 썸수학지도사 양성과정(시강포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② “甲”은 “乙”이 제2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일수)**

- ① “乙”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甲”이 지정한 운영일수를 준수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주5일 이상 개원하여야 한다. 다만, “甲”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乙”은 휴원하고자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甲”에게 휴원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乙”의 사유가 정당할 시 “甲”은 승인한다. 단 휴원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시설 및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① “乙”은 청결한 가맹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甲”과 사전합의를 거쳐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③ 상기 2항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요구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甲”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담비율 및 지급절차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 1. 간판 교체비용
  -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구분	분담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20%	“乙” 비용청구(증빙서류첨부)→90일 이내 지급(단,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1년 범위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함/ 1차 30% 청구일로부터90일 이내, 2차 30%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40%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甲”은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甲”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甲”의 부담액 중 나머지만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할 경우	40%	“乙” 비용청구(증빙서류첨부)→90일 이내 지급(단,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1년 범위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함/ 1차 30% 청구일로부터90일 이내, 2차 30%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40%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甲”은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甲”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甲”의 부담액 중 나머지만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④ 단, 점포환경개선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甲”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1. “甲”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乙”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2.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운영된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인지시켜야한다.

**제24조 (운영보고 및 경영활동 자료)**

- ① “乙”은 가맹원 운영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乙”은 “甲”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마케팅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제공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 “乙”의 운영현황(회원명부, 교재 배분 및 거래장부, 기타 제반자료)에 관한 결과를 “甲”혹은 “甲”의 대리인인 가맹지역본부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③ “乙”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甲”의 직원이 “乙”의 가맹원에 출입·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甲”은 “乙”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26조 (광고 및 판촉)**

- ① “甲”은 “乙”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고
“甲” 요청 시	표준수업모델, 교재사용, 학사운영,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및 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甲”은 경영지도계획서를 “乙”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	“甲” 부담	문의 : 수 퍼 바 이 저팀 (02-3441-4511)
“乙” 요청 시	표준수업모델, 교재사용, 학사운영,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및 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乙”의 경영지도 요청→ “甲”은 경영지도계획서를 “乙”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	“乙”의 부담(가맹비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수 퍼 바 이 저팀 (02-3441-4511)

구 분	광고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甲”	가맹 지역본부	“乙”	
전국광고	상품광고	33.3% (1/3)	33.3% (1/3)	33.4% (1/3)	광고 계획 공고 → “乙”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乙”부담액 제시 (명세서)
	상품+“乙” 모집광고	75%		25%	
	“乙”모집광고	100%		-	
지역광고	상품광고	-	50%	50%	행사 계획 공고 → “乙”부담액 제시 → “乙”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상품+“乙” 모집광고	-	75%	25%	
	“乙”모집광고	100%		-	
“乙” 단독광고		-	-	100%	
판 촉		원칙적으로 “乙”이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甲”이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제25조 (가맹원 운영상의 주요 지침)**

- ① “乙”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가맹원을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하한 형태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甲”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乙”은 “乙”과 “乙”의 직원 및 원생 등의 개인위생관리에 힘써 원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고 감염된 당사자를 원생과 가맹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③ “乙”은 “甲”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게시물을 “乙”의 가맹원 내·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다.
- ④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는 가맹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乙”은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甲”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야 하며, 대리 경영인은 “甲”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乙”은 “乙”의 회원자료의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乙”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유출된 회원자료에 대하여는 “乙”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⑦ “乙”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⑧ 학부모에게 정보수집동의서를 득한 후 “乙”은 회원에 대한 정보(연락처, 주소, 학부모 등)를 정확하게 온라인 회원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불이행에 따른 피해(재계약 거절)는 “乙”이 부담한다.
- ⑨ “甲”이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입회 및 휴회 시 Happy Call이

- ② “甲”이 전국광고를 하는 경우 “甲”과 가맹지역본부 그리고 “乙”이 1/3씩 비용을 분담하며, 각 “乙” 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乙”들의 총 분담금액을 “乙”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한다.
- ③ “乙”들이 지역단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지역본부가 50%, “乙”들이 50%씩 분담하며, 각 “乙”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乙”들의 총 분담금액을 “乙”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한다.
- ④ “甲”은 전항의 광고비를 광고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각 “乙”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책정하여 각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甲”에게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⑤ “乙”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및 판촉 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드로그·현수막·POP 등의 제작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 ⑥ 『세수학러닝센터』의 광고, 홍보, 판촉 등에 관련된 인쇄물, 영상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甲”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홍보 지원 등 내역)**

“甲”은 “乙”의 회원 모집을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은 “甲”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학부모 설명회	오픈 시 학부모 설명회 강사파견	학부모 설명회 사전홍보 완료	가맹계약기간	강사교통비 및 인건비 당사 부담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28조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甲”은 “乙”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

여 상품공급 및 영업 지원을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乙”이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乙”이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원이 불가능한 경우
3. “甲”의 회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 수와 “乙”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4. “甲”이 주최한 교육에 “乙”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甲”이 제시한 인테리어 시안과 규정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 또는 “乙”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甲” 또는 “乙”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甲” 또는 “乙”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乙”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각·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乙”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甲”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甲”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乙”이 가맹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乙”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원을 운영하는 경우

10.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乙”의 사정에 의하여 “乙”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乙”은 60일 전에 “甲”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乙”은 제30조 3항에 근거하여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9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乙”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甲”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甲”의 가맹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되는 경우 “乙”이 부담한다.

② “乙”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甲”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에 대한 비용의 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가맹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甲”이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乙”은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甲”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甲”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0조 (손해의 배상)

“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 금 일백만원(₩ 1,000,000)
- ② 제2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금 일백만원(₩ 1,000,000)
- ③ “甲”의 귀책사유 없이 “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한 경우  
- 계약 해지 직전 평균 3개월 회원 수 \* 月 교재사용료 \* 잔여 계약 月
- ④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甲”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계약종료 후 게시일자 \* 日 3만원
- ⑤ 본 계약상의 의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액 전부

### 제6장 기타

#### 제31조 (영업의 양도)

① “乙”이 제3자에게 가맹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甲”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乙”이 “甲”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乙”은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비는 포기한다.

② “甲”은 양도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이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甲”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초도 물품비(₩1,968,000원)(VAT포함), 신입교육훈련비(₩400,000)(VAT포함)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甲”은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乙”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甲”이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甲”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甲”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甲”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乙”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甲”의 귀책사유

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乙”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영업의 상속)**

- ① “乙”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가맹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乙”의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甲”이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甲”은 “乙”이 계약 기간 중에 “甲”의 가맹원 시스템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乙”에게 “甲”의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같다.

**제34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 ① “甲”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乙”과 협의하여 이를 배상한다.
- ②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乙”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보험의 가입)**

“乙”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가맹원 영업과 관련하여 “乙”의 직원 기타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는 “乙”이 정한다.

**제36조 (지연이자)**

“본 계약”에서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통지방법)**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교육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甲” 또는 “乙”의 계약상 주소로 배달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계약”은 “甲”과 “乙”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甲”과 “乙”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과 “乙”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 ② 양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 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甲”과 “乙”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한다.

**제40조 (가맹비 예치)**

- ① “甲”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비 예치 등)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비 예치 의무에서 배제된다.
- ② “乙”은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甲”은 입금확인 후 “乙”에게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제41조 (특약사항)**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乙”의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학원 및 교습소)

년 월 일

[甲]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방배동) 정금빌딩 2층  
 사업자등록번호 : 114-86-63759  
 회 사 명 : ㈜신사고아카데미 대표이사 홍 범 준 (인)

[乙] 주 소 :  
 주민 등록 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 C.P :

전 자 우 편 :

 특약사항